

## 2. 都市計劃施設基準에 관한 規則改正(案) 立法豫告

建設部公告 第1992-124號 1992. 9. 21

### 1. 개정이유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한 시설의 종류, 결정기준,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제외 또는 통합된 시설에 대한 조문을 정리함과 아울러 그동안 규칙운 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가.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신설된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결정가능지역 및 설치기준을 정함.

시설명	시설의 종류	결정가능지역	설치기준
공공직업훈련 시설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공공 직업훈련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용도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음	직업훈련기본법의 의함
열공급설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열공급시설중 열원시설과 열수송시설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일반공업·전용공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함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특정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에 의한 적출물처리시설	일반폐기물 및 적출물처리시설 : 자연녹지·생산녹지·준공업·일반공업·전용공업지역 파쇄·소각시설 : 일반주거·준주거·일반상업지역 공공처리시설 및 특정폐기물처리시설 : 일반공업·전용공업·준공업지역(매립시설 제외)	폐기물관리법·의료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함

시 설 명	시설의 종류	결정가능지역	설치기준
수질오염방지 시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자연녹지·생산녹지·준공업·일반공업·전용공업지역	수질환경보전법 및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차장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사업장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 다만, 폐수처리시설을 분리 설치한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도 가능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중기운전학원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가된 자동차운전학원 및 중기운전학원	일반주거·준주거·일반상업·준공업·일반공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소년시설	청소년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전용시설	일반주거·준주거·근린상업·준공업·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청소년육성법에 의한
장례식장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례식장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식장	준주거·근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나.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된 고속철도,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시설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

다.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통합 또는 확대된 시설에 대한 조

문을 정리함.

-통합 : 철도 + 고속철도 → 철도

-확대 : 자동차검사시설 → 자동차 및 중기검사 시설

라. 시설별 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시설별	결정가능지역(현행)	결정가능지역(개정)
자동차정류장( 시내버스)	일반주거·준주거·일반상업·준공업·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추가
전기공급설비( 화력발전소)	전용공업·일반공업지역	준공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추가
운동장	일반주거·준주거·근린상업·일반상업·중심상업·준공업·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추가

시설별	결정가능지역(현행)	결정가능지역(개정)
종합의료시설	일반주거·준주거·일반상업·중심상업·준공업·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추가
가스공급설비	일반주거·준주거·전용공업·일반공업·준공업·자연녹지지역	일반주거·준주거지역 제외 생산녹지지역 추가

다. 시설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함.

시설별	(현행)	(개정)
가스공급설비	도시가스시설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추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	송유관시설, 위험물저장시설(소방법에 의한 3,000m <sup>2</sup> 이상)
공동묘지	공설묘지, 일반에 제공된 사설묘지	납골당 추가 *장례식장은 부대시설로 허용
화장장	공설 화장장, 일반에 제공된 사설 화장장	*부대시설로 납골당과 장례식장 허용

바. 국민학교를 2,500세대 미만이라도 교육장의 요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사. 연구시설은 국가·지자체·정부출자 또는 출연기관이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함.

아. 교차점광장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부속물과 교통관리 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2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참조: 도시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3. 의견제출

**주택건설 2백만호 앞당겨진 내집마련**